

신규 규정이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도록: 알아야 할 사항



이것은 제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 적절한 경우, 공공 혜택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여, 본인, 자녀, 배우자 및 부모의 건강과 끼니를 건너지 않는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은 공공 혜택 또는 서비스 적격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공공 혜택 신청에 제공되는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며, 오직 적격성 판단에만 사용됩니다. 연방 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위해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 도움을 얻는 데 이민신분에 대한 두려움이 길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사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접속 방법

mybenefitscalwin.org 또는
www.coveredc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510-272-3663으로 전화하여
전화상 신청하거나

우송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알라메다 사회복지부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2022년 9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 이전 백악관 행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던 유해한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적으로 뒤바꾸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규정은 이민자 지역사회에게 다음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음에 포함한 현재 또는 차후 이민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적절한 공공 혜택 신청 및 수혜:

- 의료 관리 접근
 - 소아, 성인 및 고령자의 메디-칼
 - 커버드 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
 - COVID 백신, 검사, 치료
 - 단기 재활치료
 -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 식량 보조
 - 칼프레쉬
 - 여성, 유아 및 아동 대상 특수 보조 영양 프로그램(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 Children, WIC)
 - 학교급식
- 주택 지원
 - 섹션 8 임대 지원
 - 공영주택
- 취업 지원
 - 실당
 - 장애
 - 근로상해보험
 - 인력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직업 센터
 - 연방 및 주정부 은퇴
 -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또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연방, 주정부 및 지방 현금 이외의 혜택
 - 나눔의 계절(Season of Sharing, SOS)
 - 팬데믹 구호
 - 퇴역군인 원조(Veteran's Assistance)
 -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신규 규정이 이민 가족을 보호하도록

새로운 국토안보부 규정에는 오직 합법 영구 거주권(LPR 또는 "영주권") 또는 입국 신청의 경우에만 공적부조 평가가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일부의 이민자는 공적부조 심사에 면제됩니다:

- 미국 시민(또는 신청자)
- 합법 영구 거주자(LPR)
- 난민, 피난인 또는 임시보호신분(또는 신청자)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특별 이민자
- 특별 이민자 소년 신분 또는 여성폭력방지법(VAWA) 자기청원자
- T 또는 U 비자 소유자(또는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에 본인이나 자녀 또는 모든 적격한 가정 구성원의 공공 혜택에 대한 신청 또는 수혜가 감안되지 않습니다.

합법 영주 거주권 또는 입국 신청 시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되는 프로그램은 오직 다음 뿐입니다.

- 칼웁스, 일반 부조(General Assistance, Ga)와 보족적 소득 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같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
- 메디-칼 지원의 시설적 장기 관리

이러한 혜택을 이용해도, 지원에 대한 선서 진술서, 당사자의 교육 수준 및 능력, 소득 및 수혜 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나 최근이었는지 등의 기타 요인이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됩니다.

공적부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방문합니다:

- [수혜 유지하기](#)
- [이민자 가족 보호하기](#)
- [국민 이민법 센터](#)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 [미국 이민국\(USCIS\) 공적부조 자원](#)



개별적인 지침을 찾으시나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개인 및 가족에게 믿을 수 있는 비영리 이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언을 얻도록 장려합니다. 사회복지기관 직원은 법적 지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별도 상황에 대한 지침을 얻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합니다.

- [아시아계 태평양섬주민 법률 지원\(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510) 251-2846
- [베이 에리아 법률 보조\(Bay Area Legal Aid\)](#)
(800) 551-5554 또는 (510) 250-5270
- [이스트 베이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East Bay\)](#) (510) 768-3100
- [센트로 리걸 데 라 라자\(Centro Legal de la Raza\)](#)
(510) 437-1554
- [이스트베이 지역사회 법률 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 (510) 437-4949

*제10공공법(AB 108)에 따라, 위 목록의 비영리 이민 서비스 제공자의 면제 이민 신분이 모두 이용되었습니다. 위 목록에 기재된 서비스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례에 대한 조언을 얻으십시오.